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5년 3월 9일  
(월요일)

북부신문 7면

##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강북구의회(김동식 의장)는 제187회 임시회 후회 중인 지난 4일 행정보건의위원회에서 2월 25일 구본승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

분쟁 조정 인원 삭제해 누구든지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해 주민들에게 분쟁조정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조례에서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그 대신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자'로 개정해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

평소 주민의 권리행사와 규제 개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구본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규모점포 등과 관

련된 분쟁의 조정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그 동안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분쟁 조정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수정하고 조례안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을 거쳐 수정동의했으며, 오는 10일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포스트 6면

##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10일 최종 처리

강북구의회(김동식 의장)는 제187회 임시회 후회 중 3월4일 개최된 행정보건의위원회에서 2015년 2월 25일 구본승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들에게 분쟁조정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조례에서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그 대신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자'로 개정하여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평소 주민의 권리행사와 규제 개혁에 많

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구본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그 동안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분쟁 조정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수정하고 조례안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을 거쳐 수정동의 하였으며, 오는 3월 10일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 개정조례안 처리

### 구본승 의원, 주민들에게 분쟁 조정 기회 최대한으로 보장위해

강북구의회는 제187회 임시회 휴회 중 3월 4일 개최된 행정보건의위원회에서 구본승의원이 발의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들에게 분쟁 조정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조례에서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구본승 의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그 대신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자'로 개정하여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구본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그 동안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분쟁 조정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수정하고 조례안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구 수정을 거쳐 수정동의했으며, 오는 3월 10일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강북구의회(김동식 의장)는 제 187회 임시회 휴회 중 지난 4일 개최된 행정보건의위원회에서 2015년 2월 25일 구본승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해 주민들에게 분쟁조정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조례에서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그 대신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자'로 개정해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평소 주민의 권리행사와 규제 개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구본승 의원은 이번 제안 설명을 통해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해 그 동안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분쟁 조정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16조 중 '서울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명칭을 '서울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수정하

고, 조례안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구 수정을 거쳐 수정동의했으며, 지난 10일 열린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 됐다.

유영길 기자